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사무국)

2021. 2.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56호
-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2. 8.
- 라.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안이유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등 회의 일수를 늘리고, 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나. 정례회는 연간 ‘45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는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로 변경함(안 제4조)
- 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회,임시회 일수를 연장하고, 두 번째 제2차 정례회의 집회날짜 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기존 “100일”로 되어 있던 회의총일수를 “110일”로 변경
- 안 제3조는 기존 “45일 이내”로 되어 있던 정례회 일수를 “55일 이내”로, 기존 “10일 이내”로 되어 있던 임시회 일수를 “15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4조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25일”에서 “11월18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제1차정례회”에서 “제2차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 검토결과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으며, 회의일수의 연장으로 안건에 관한 의견수렴과 심사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적정성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겹치지 않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 결산안,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의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4조(정례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 ① 지방의회는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